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80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용혜인 · 김 윤 · 김남희
서왕진 · 서미화 · 박정현
이광희 · 오세희 · 정혜경
이연희 · 손 솔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에서 도입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특례조항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어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또한 최근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관계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 범위와 종류 및 기간이 제한적이고,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제재가 강력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

집. 또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마지막으로, 친밀관계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상호 간의 신고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에 현행법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으로 전환하며,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친밀관계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에 있어 형사처벌 절차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의 보장’에 두고, 가정보호사건제도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며,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4조 등).

다. 친밀관계폭력의 정의 규정에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친밀한 관계에 ‘교제관계’, ‘동거관계’ 등을 포함하며, 친밀관계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등을 추가하고 「형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라. 친밀관계폭력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행위자 격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응급조치 권한과 현장진입 권한을 강화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위험성 평가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상호 간의 신고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사. 긴급임시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의 기간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함(안 제11조).

아. 임시조치에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신설하고, 접근 금지를 1킬로미터 이내까지 확대하며, 임시조치의 기간과 기간 연장의 범위를 상향함(안 제13조).

자.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이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차.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신설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밀관계폭력범죄 피해자의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화함(안 제5조).

타.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밀관계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인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제2호의 “가정폭력”과 제3호의 “교제폭력”을 포함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 있거나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정구성원

나. 교제관계

다. 성적 관계를 맺는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친족

6. “교제관계”란 연인관계나 연인관계에 이르기 위하여 호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7. “친밀관계폭력범죄”란 친밀관계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중 제119조(폭발물 사용),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의 죄

나.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제168조(연소), 제169조(진화방해), 제170조(실화),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제174조(미수범), 제17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바.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사.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아.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자.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카. 「형법」 제2편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의 죄
- 타.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파.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하.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절도),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1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거.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너.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9조(미수범)의 죄

더.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미수범), 제15조의2(예비, 음모)의 죄

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의 죄

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

서. 「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제3호,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항(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제3호,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어. 가목부터 서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저. 기타 「형법」에 위반하는 범죄로서 이 법이 규정하는 친밀관계폭력에 해당하는 범죄

8.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제7호가목부터 저목까지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9. “친밀관계폭력행위자”란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며, 제10호의 “가정폭력행위자”를 포함한다.

10.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11. “피해자”란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1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반의사불벌의 배제) 제2조제7호의 친밀관계폭력범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제312조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의 죄
2.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제5조(정당방위 등) ① 친밀관계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행한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그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방 또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조사·심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를 행한 자 등 친밀한 관계인 사람 간의 관계의 진행과정
2. 친밀관계폭력이 제1호의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게 미친 누적적인 심리적·경제적 영향 등 모든 영향
3. 친밀관계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역학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의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한다)
4. 친밀관계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 속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 폭력이 미치는 심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영향

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제5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행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

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2.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친밀관계폭력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신고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응급조치) ① 친밀관계폭력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친밀관계폭력의 중단 통보 및 향후 폭력행위 재발 시 처벌 서면경고
2.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 또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
3.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4.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하고 안내한다)
5.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6. 제13조에 따른 임시조치,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고지

②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체에 시간적 근접성을 가진 상처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
2.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이 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

3.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되었던 전력이 있는 경우
 4. 친밀관계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
 5. 이 법에 따른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친밀관계폭력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스톱킹행위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7.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현장의 징후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에도 불구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
1. 해당 주거지에 주소를 두는 합법적 거주자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2.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
 3. 기타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상호 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식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친밀관계폭력행위자 식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항목, 작성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당사자 간에 과거 친밀관계폭력 신고 및 현장출동기록,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2. 당사자 간에 과거 폭언이나 위협,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3. 각 당사자의 본인 또는 제3자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4. 각 당사자의 신체 크기, 폭력의 정도 및 부상의 심각도가 대등한지 여부
5. 목격자의 증언
6. 기타 친밀관계폭력행위자를 식별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⑤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의 증거 확보 및 임시조치 등 처분의 판단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조사서의 항목, 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친밀관계폭력행

위자인 경우 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친밀관계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13조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시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친밀관계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친밀관

계폭력을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친밀관계폭력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위급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위반자를 즉각 유치하고 제13조제1항제8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시조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긴급임시조치의 기간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까지로 한다.

제12조(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

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조치) ① 관사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서면경고
2.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3.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4.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8.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으며, 제1항제7호는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와 병과하여야만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친밀관계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8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6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 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⑨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⑪ 제1항제7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친밀관계폭력행위자, 그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⑬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2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판사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임시조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위탁 결정을 받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항고) ① 친밀관계폭력행위자, 그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6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8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 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1조(친밀관계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밀관계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

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24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2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26조(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친밀한 관계인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전자장치의 부착
5. 친권자인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6.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7.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피해자 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8. 피해자 및 친밀한 관계인 사람의 주민등록열람 제한
9.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의 금지(피해자가 별도로 이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피해자에게 거처양도(피해자가 별도로 이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친밀관계폭력행위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친밀관계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⑦ 제6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26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이내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29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친밀관계폭력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27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28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친밀관계폭력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상습적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28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친밀관계폭력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의5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로, “제5조”를 “제9조”로,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를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로 한다.

제4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보호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사건을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때

3.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처분을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로서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된 때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위임규정)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를 “법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2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가정보호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4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로 한다.

⑨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1호”로, “제2조제4호에”를 “제2조제10호에”로 한다.

⑩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